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 21 선고 2021가단596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김도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택

담당변호사 이중산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2019. 12. 3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4. 28. 접수 제218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치번호 있는 경우 각 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971520호 대여금 사건의 2013. 3. 28.자 판결에 기하여, 소외 C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36,108,916원과 그 중 18,482,740원에 대한 2012.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은 1994. 11. 14.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이 2019. 12. 31.경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들인 피고, F, G, 소외 C, H가 있었는데, 처인 E도 2021. 3. 10.경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4. 28. 접수 제21810호로, 2019.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소외 C는 2019. 12. 31.경 무렵부터 계속하여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C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인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C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어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한 요건과 방식에 따른 망 D의 유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2019. 12. 3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4. 28. 접수 제218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